

농(임)업인 실익상품(2종) 상 품 해 설

목 차

I. 개정 배경

II. 상품내용

1.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2.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배당)

상 품 개 발 부
(상품개발팀)

□ 특약 신설을 통한 보장 강화

- 교통재해사망특약의 개발로 농작업 이외의 교통사고를 보장하여 농(임)업인의 보장을 강화하려함

□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에 따른 장애인형 명칭 변경(일반5형 신설)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내용 中 장애인에 대한 사전고지 폐지 이행으로 장애인형의 명칭을 일반 5형으로 변경하도록 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최소가입나이 축소

-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및 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농활동 저연령층의 농작업 일손돕기등 참여가 많아진 바, 최소가입나이를 축소하여 가입을 확대하도록 함

(현행) 20세 ~ 87세 → (개정후) 만 15세 ~ 87세

II 상품 내용

1.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 상품의 구성

주계약	종목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기본형	일반형	개인형/부부형	1형, 2형, 3형, 4형, 5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산재형	개인형/부부형	1형, 2형
		일반형	개인형/부부형	1형, 2형, 3형, 4형, 5형
종속 특약	장제비지원특약(무배당)	개인형/부부형		
	재해사망특약(무배당)	개인형/부부형		
독립 특약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개인형/부부형		

□ 가입형태

보험기간/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대상	최고 가입한도
1년	연납	농·임업인	- 주계약 : 1,000만원(단일) - 장제비지원특약(무) : 100만원, 300만원 - 재해사망특약(무) : 1,000만원(단일) - 교통재해사망특약(무) : 1,000만원(단일)

□ 가입나이

구 분					가입나이
주계약	기본형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일반형	개인형	1형·2형	만 15세 ~ 87세
				3형·4형·5형	만 15세 ~ 84세
			부부형	1형·2형	만 15세 ~ 87세
				3형·4형·5형	만 15세 ~ 84세
		산재형	개인형 부부형	1형·2형	만 15세 ~ 84세
종속 특약	장제비지원특약(무)				만 15세 ~ 87세
	재해사망특약(무)				
독립 특약	교통재해사망특약(무)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농기계종합보험 동시가입자 또는 기가입자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부부형 제외)

□ 보장내용

- 주계약 : 기본형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급 부 명	일반형					산재형	
	1형	2형	3형	4형	5형	1형	2형
유족급여금	5,500만	7,500만	9,000만	1.2억	7,500만	1.2억	1.2억
장례비	100만				100만	1,000만	1,000만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	7,500만	9,000만	1억	7,500만	1억	1.2억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 × 장해 율	7,500만 × 장해 율	9,000만 × 장해 율	1억 × 장해 율	-	1억 × 장해율	1.2억 ×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					3,000만	5,000만
휴업(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2만		3만		2만	4만	6만

급부명		일반형					산재형	
		1형	2형	3형	4형	5형	1형	2형
재활급여금 (고도장해)		500만					1,000만	3,000만
재활급여금 (재해장해)		500만 × 장해율				-	1,000만 × 장해율	3,000만 × 장해율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진단1회당)		30만					30만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수술1회당)		30만					30만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기본형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장 (농작업 중 질병 또는 상해 입원비 최대 한도) (각각 1천만원)					(각각 5천만원)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기담보형	-						

주) 지급사유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 선택특약 : 개인형/부부형

(단위 : 원)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제비지원특약(무)	보험기간 중 사망시	100만 / 300만
재해사망특약(무)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시	1,000만
교통재해사망특약(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1,000만

주) 장제비지원특약(무)는 농업인만 가입가능

□ 보험료

○ 주계약

- 일반형

(단위 : 원)

구분			1형	2형	3형	4형	5형
개 인 형	기본형	보험료	96,000	112,200	127,500	145,100	97,600
		정부지원액	48,000	56,100	63,750	72,550	48,800
	상해·질병 치료비 부(不)담보형	보험료	51,800	68,000	83,400	101,000	53,400
		정부지원액	25,900	34,000	41,700	50,500	26,700
부 부 형	기본형	보험료	192,000	224,400	255,000	290,200	195,200
		정부지원액	96,000	112,200	127,500	145,100	97,600
	상해·질병 치료비급여금 부(不)담보형	보험료	103,600	136,000	166,800	202,000	106,800
		정부지원액	51,800	68,000	83,400	101,000	53,400

- 산재형

(단위 : 원)

구분			1형	2형
개 인 형	기본형	보험료	159,600	180,700
		정부지원액	79,800	90,350
	상해·질병 치료비급여금 부(不)담보형	보험료	114,700	135,700
		정부지원액	57,350	67,850
부 부 형	기본형	보험료	319,200	361,400
		정부지원액	159,600	180,700
	상해·질병 치료비급여금 부(不)담보형	보험료	229,400	271,400
		정부지원액	114,700	135,700

주)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가정시 금액/ 농경영체 미등록자 및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정될 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택특약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개인형	부부형
장제비지원특약(무)	100만원	11,500	23,000
	300만원	34,500	69,000
재해사망특약(무)	1,000만원	9,900	19,800
교통재해사망특약(무)	1,000만원	4,500	9,000

주) 선택특약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정이율 : 3%

2.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배당)

상품의 구성

종목명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배당)
세 목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형태

보험기간	납입방법	가입나이	최고 가입한도	보험계약 관계자
1일 ~ 89일	일시납	<u>만15세</u> ~87세	1,000만원 (단일)	- 계약자 : 농업인 - 피보험자 : 계약자가 농업작업을 위해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

□ 보장내용

○ 주계약 : 일반형(기본형/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족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100만
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1,000만
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1,000만×장해율
간병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이상 또는 농업작업 안전질병으로 80%이상 장해시(각각 최초 1회한)	500만
휴업(입원)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
재활(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500만
재활(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500만×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30만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시	진단 1회당 30만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형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장 농작업 중 질병 또는 상해 입원비 최대 1천만원 한도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주)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의 경우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은 농업
작업안전질병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 주계약

(단위 : 원)

보험기간(일)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보험료	정부지원액	보험료	정부지원액
1~2	3,100	1,550	900	450
3	3,900	1,950	1,200	600
4~5	6,200	3,100	1,900	950
6~7	7,700	3,850	2,400	1,200
8~10	8,500	4,250	2,600	1,300
11~14	10,000	5,000	3,100	1,550
15~17	10,800	5,400	3,300	1,650
18~21	12,300	6,150	3,800	1,900
22~24	13,100	6,550	4,000	2,000
25~27	14,600	7,300	4,500	2,250
28~30	15,400	7,700	4,700	2,350
31~45	18,500	9,250	5,600	2,800
46~60	23,100	11,550	7,100	3,550
61~89	30,800	15,400	9,400	4,700

주)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가정시 금액/ 농경영체 미등록자 및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정될 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정이율 : 3%

[별첨1] 농(임)업인내안전보험(무) 지급사유 세부사항

급 부	지 급 사 유
유족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장례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다만,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 제외)
고도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재해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
휴업(입원)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활 (고도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재활 (재해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별첨2] 주계약 급부 中 「상해·질병치료급여금」에 관한 세부사항

○ 보장내용

종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한도	
					산재형 이외	산재형
질병	입원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하나의 질병당 1,000만원 한도	하나의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통원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상의 ‘항목별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상의 ‘항목별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상해	입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질병입원과 상동	하나의 질병당 1,000만원 한도	하나의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질병입원과 상동		
	통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질병통원과 상동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질병통원과 상동		

○ 항목별 공제금액 (통원에 해당하는 사항)

종목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1만원’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약국,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다수보험의 처리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비례분담액 예시]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times \frac{각\ 계약별\ 보상책임액}{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